

## 한국환경공단



수신자 정부 유해성시험자료를 활용한 기업 및 관계자 (경유)

제 목 정부 유해성시험자료 무단사용 자진신고 안내

- 1.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- 2. 우리 공단은 화학산업계의 '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'이행 지원을 위해 유해성 시험자료를 생산하여 저가에 제공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.
- 3. '21년 1차 등록이 마감됨에 따라 정부자료 사용승인 신청 현황과 화학물질 공동등록 현황을 비교 검토한 결과 무단사용 건이 지속적으로 확인 되었습니다. 이에 정부에서는 정부보유 유해성시험자료의 부정사용을 방지하고 화평법 이행 시 저작재산권에 대한 올바른 사용 문화 형성을 위해 무단사용 자진신고 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자 합니다.

【아 래】

- 가. (신고기간) 2022.7.7. ~ 8.5. (30일간)
- 나. (신고대상) 등록 시('21.1월~) 정부보유 유해성시험자료를 무단 사용한 기업
- 다. (신고방법) 국유재산 등재여부에 따라 신청방법 상이 (붙임 참조)
- 라. (신고혜택) 자진신고 건에 한하여 구제 ※ 자진신고 기간 이후 무단 사용건 확인 시 화평법, 저작재산권법 등에 따른 행정조치 예정

붙 임: 정부자료 무단사용 자진신고 안내 1부.



★과장 **변균석** 부장 홍철규 처장 **강**종근

협조자

시행 신뢰성보증부-1407 ( 2022. 7. 7. ) 접수 ( 으 22689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한국환경공단 화학물질시험처 / http://www.keco.or.kr 전화 02-6050-1311 /전송 - / cyclamens7@keco.or.kr / 공개